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시행 2012.12.4] [국무총리훈령 제595호, 2012.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초청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여행자"라 한다)의 항공운송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예산으로 여행자(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의 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4>

1. 외국정부등으로부터 항공권이 지정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
2.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3. 기타 예외적용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3조(탑승직원) 여행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적항공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1. 자국적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는 구간을 여행할 경우
2.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국적 항공기를 이용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계약의 체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국적 항공사와 국제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체결된 계약내용은 제2조에 규정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제5조(운송의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가 국외로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발행관은 미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국적 항공사(이하"운송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부항공운송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에 의하여 운송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의뢰서의 발행) ①의뢰서는 여행자의 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기관의 장(이하 "발행관"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여행자에게 교부한다.

②발행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뢰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운임의 지급) 발행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따라 운송업자에게 항공운임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항공권의 구입) 여행자는 의뢰서를 운송업자에게 제출하고 항공권을 취득한다.

제9조(항공운임의 추가지급) ①여행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적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여정등의 변경으로 항공운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관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운송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운임을 지급한다.

②운송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운임을 청구하기 위하여 여행자에게 관계자료의 작성을 요구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항공운임의 환불) ①여행자가 여정등을 변경하거나 항공권을 사용사지 아니하여 항공운임을 환불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관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송업자에게 환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여행자는 제1항의 환불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사용 항공권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여행도중 또는 귀국 후 즉시 발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2.4>

부칙 <제595호,2012.1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